

사업주위탁훈련 사업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
귀 사업장은 「(주)한국능률향상교육개발원」에 사업주훈련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, 조사결과 귀 사업장의 훈련생은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직접 접속하여 과제제출 및 평가 응시 등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LMS를 조작하여 훈련생들을 부정 수료시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

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 사업장 및 거소에 등기우편 발송 4회, 사업장 직접 방문 등 수차례 통지 하였으나, 이전(폐업) 등의 사유로 『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』 공문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- 다 음 -

- ☐ 송달내용 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
- ☐ 대 상 자 : (주)네오텔 대표(이재홍)
- ☐ 공고기간 : 2016. 1. 6. ~ 2016. 1. 20.(15일)
- ☐ 처분내용 :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“부정수급액 528,000원 및 추가징수액 528,000원 반환명령, 처분일로부터 330일 지원금자제한” 처분함
 - ※ [별첨] ①행정처분 사전통지서, ②부정수급 내역
 - ※ 법적근거: 『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,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제1항, 동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[별초 6의2] 나. 개별기준』
- ☐ 문의사항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(메세타워 4층)
안양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최수영(☎ 031-463-0714)

2016. 1. 6.